

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 안내



아래 모든 증빙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2.06.30.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청약자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당첨 취소는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
■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구비서류

구분	해당서류	필수	해당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본인 방문 시	신분증	●		본인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
	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	●		본인	발급용도 : 당첨자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
	인감도장	●		본인	'본인서명사실확인서'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, 대리인 위임 불가
	주민등록표등본	●		본인	주민등록번호(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 포함"으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	●		본인	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 포함"으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●	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발급 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) ※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
	출입국사실증명원	●		본인	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청약신청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(개명한 경우,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)
	주민등록표등본		●	배우자	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●	배우자	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·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관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'상세'로 발급
	복부확인서		●	본인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(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)
	다자녀가구 특별공급배정기준표	●		본인	[견본주택 비치] 배정기준표 작성
	주민등록표초본		●	직계존속	3세대구성 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과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,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3년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 ※ 성명, 주민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 포함"으로 발급
	한부모가족증명서		●	본인	여성가족부의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●	본인	만 19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성명, 주민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'상세'로 발급)
			●	자녀	만 18세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성명, 주민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'상세'로 발급)
	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		●	본인 또는 배우자	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 [임신진단서 이외 불가]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확인각서		●	본인 또는 배우자	[견본주택 비치] 임신중임 경우
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련 증명서류		●	본인 또는 배우자	자녀가 입양의 경우	
서약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	●		본인	[견본주택 비치]	
대리인 방문 시 추가 제출서류	위임장	●		본인	[견본주택 비치] 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
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●		본인	발급기준 : 본인 발급용 / 용도 : 위임용 ※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
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●		대리인	- 대리인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외국국적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) - 서명 또는 날인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'주민등록번호',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 및 '주소변동내역'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해당사항을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

■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

해당서류	필수	해당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해외체류 증빙서류	●		본인	-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→ 파견 및 출장명령서(직인날인)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→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- 근로자가 아닌 경우 →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,②모두 반드시 제출 ※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※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
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	●	본인 및 세대원	여권 불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불인정
출입국사실증명원	●		세대원 및 미성년자녀	세대원 및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※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(개명한 경우,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)